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90
----------	------

2021년 7월 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5월 28일 김경우 의원 외 15인 발의
2. 회부일자 : 2021년 5월 31일
3. 상정일자 :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6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경우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이
나, 이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반
복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의 시행(‘20년 12월 29일)에 따라 시장 및
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적정근로시간의 확보, 야간근로자
의 교대근무 관련 근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건강권을

보장하도록 함으로써, 서울시립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근로시간의 확보를 통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5조의4를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「보건복지인력지원법」의 시행에 따라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근로시간의 확보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배경

- 보건의료 노동자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보건의료서비스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,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음.
- 이와 같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해 2019년 4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이 제정된 바 있음.
- 서울시에서도 2021년 4월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조례」를 제정한 바 있음.

- 본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제14조¹⁾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개정안에서는 시장과 시립병원의 장이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을 명시하였음.
-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일가족 양립문제가 지적되며,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상 여성 종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사실이 지적됨.
-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²⁾ 활동인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.9시간, 치과의사 45.0시간, 한의사 49.1 시간으로 나타남.
- 또한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3교대(54.8%), 상근직(37.6%)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야간(낮/밤 교대근무 시 밤 근무) 근무횟수는 간호사 4.0회, 간호조무사 2.5회로 나타남.

1)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 (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·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2) 요양기관 : 의료기관(상급·종합병원, 병·의원, 요양병원, 치과 병·의원, 한방 병·의원), 약국, 희귀·필수의약품센터, 보건기관(보건소 등), 보건진료소 등



(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“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” <2019.12.18.>)

- 시립병원 종사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나 서울시 시립병원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「시립병원 간호사 직무환경 실태조사 연구」를 실시한 바 있음.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직무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.
- 주요 불만족 요인은 ‘교대 근무’ 인 것으로 분석되며, 교대 근무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근무형태로 인식되지만 실제 종사자들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.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공정한 근무 일정 마련 등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이 제안된 바 있음.³⁾

3) 소예경 외 (2018), 「시립병원 간호사 직무환경 실태조사 연구」,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.

- 해당 조례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경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.

3 종합의견

- 보건의료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의료 인력으로, 보건의료 서비스는 다른 사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의료인력 관리가 필요함.
-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노동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%가 이직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된 이직 고려사유로는 ‘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’를 꼽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처럼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이직 등의 현상을 감소시키고, 양질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시립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8일
발 의 자 :김경우, 경만선, 권영희,
김용석, 김제리, 서윤기,
신정호, 양민규, 이상훈,
이준형, 이호대, 임종국,
장인홍, 채유미, 최 선,
황인구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나, 이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의 시행(‘20년 12월 29일)에 따라 시장 및 보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적정근로시간의 확보, 야간근로자의 교대 근무 관련 근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건강권을 보장 하도록 함으로써, 서울시립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근로시간의 확보를 통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5조의4를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적정근로시간의 확보) ① 시장과 시립병원의 장은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시립병원의 장은 이를 보호·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4(적정근로시간의 확보)</u></p> <p>① <u>시장과 시립병원의 장은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시립병원의 장은 이를 보호·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문서번호	2021033000000026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
접수일 : 2021.03.30	
회신일 : 2021.03.31	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의4 (적정근로시간의 확보)를 신설하는 것은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근로시간의 확보를 통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언적·권고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정책조사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채소영

☎ 02-2180-7942
e-mail : liz1998@seoul.go.kr